

# <彙 報>

1. 本研究所主管으로 研究員 朴在潤專任講師와 裴茂基專任講師는 각각 “Consumer Behavior in a Money Economy” (7.19)와 「韓國港灣勞動의 需給과 賃金研究」(9.23)라는 主題로 定例研究發表會를 가졌다.
2. 所長 李賢宰教授는 8月 15일부터 8月 31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베라에서 開催된 Association of Developm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of Asia and the Pacific (ADIPA) 第2次總會에 參席한 뒤 日本 아시아經濟研究所 및 一橋大學經濟研究所를 訪問하여 研究交流問題를 協議하고 9月 1日 歸國하였다. 그리고 李所長은 금번의 ADIPA 總會에서 同機構의 理事로 被選되었다.
3. 研究員 邊衡尹教授는 8月 15일부터 8月 31일까지 캐나다의 토론토大學에서 開催된 世界計量經濟學會에 參席하고 9月 1日 歸國하였다.
4. 研究員 朴宇熙副教授와 金世源助教授는 8月 26일부터 9月 26일까지 對아프리카 建設企業進出의 可能性과 條件에 대한 調査次 리비아, 아이보리 코스트,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자이레 등 아프리카諸國을 巡訪하고 歸國하였다.
5. 研究員 鄭英一助教授는 「韓國과 日本의 所得 및 資産分布」에 관한 共同研究를 위하여 8月 15일부터 8月 31일까지 日本 一橋大學經濟研究所에 滞在한 후 歸國하였다.
6. 本研究所 姜光夏助教는 美國 텍사스大學에서 經濟學을 研究하기 위하여 8月 12日字로 助教職을 辭任하고 8月 20日에 出國하였다.
7. 서울大學校의 綜合化 및 移轉에 따른 機構改編에 있어 本研究所는 1975年 3月 서울大學校 設置令 第6條에 依據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로 昇格 改編됨에 따라 本研究所 規程이 9月 10日字로 아래와 같이 制定 施行되었다.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 6조 제 1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연구소는 경제문제 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부, 경제문헌자료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부와 센터에 부장 각 1인을 두되, 연구소의 연구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

1975.09